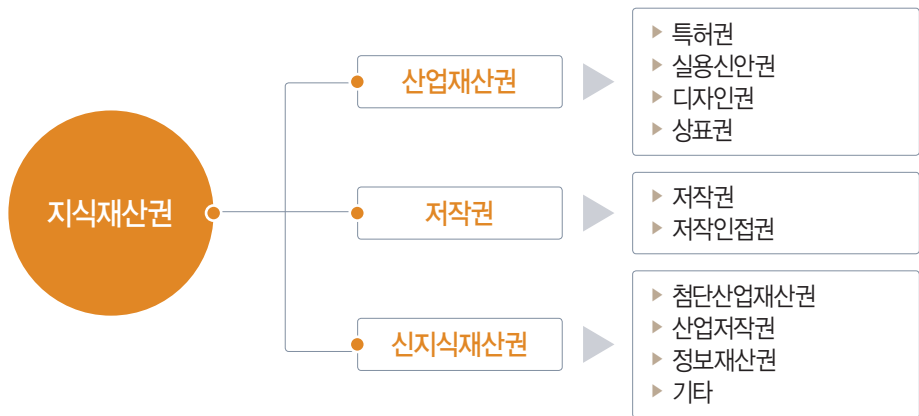


0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기본법 § 31)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p>(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p> <p>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p>	<p>(2)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p> <p>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p>
<p>지식재산권</p>	
<p>(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p> <p>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p>	<p>(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p> <p>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p>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 기 (전하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특허

(고도한 발명)

- 엔진 제어 시스템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자동형 현가 시스템
- 변속기 시스템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 램프 형상
- 리어 스포일러 형상

디자인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 백미러
- 컵홀더
- 자동차도어
-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

- 자동차 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등)
-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BMW 등)

상표

(상품의 명칭)



상표의 구분

구분	상 표	서 비 스 표	업 무 표 장	단 체 표 장
정 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과자, 옷, 학용품, 자동차 등에 사용)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광고업, 금융업, 요식업 등에 사용)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사 례				
등 록 번 호	40-0605404	41-0167741	42-0003607	44-0000033
권 리 자	씨제이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재)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남해축방멸치 영어조합법인

※ 출원번호 예시 10-2009-0000150

▼ ▼ ▼
권리 년도 일련번호

등록번호 예시 10-0256534-00-00

▼ ▼ ▼ ▼
권리 일련번호 구분 구분

- 권리 구분 CODE

10 특허	40 상표
20 실용신안	41 서비스표
30 디자인	42 업무표장
	43 단체표장
	4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45 상표서비스표
5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66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70 지정상품 추가등록	
71 지정서비스 추가등록	
72 지정업무 추가등록	
73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	
7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	
75 지정상품 서비스업 추가등록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방송할 권리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 다음해부터 5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5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50년간 ■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할 때로부터 50년간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함



0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1) 선출원주의

①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실용신안)를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② 시기적 기준(日기준)

- 다른 날짜 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날짜 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특허법 제 36조 2항)

③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 (특허 및 실용신안)

(2) 도달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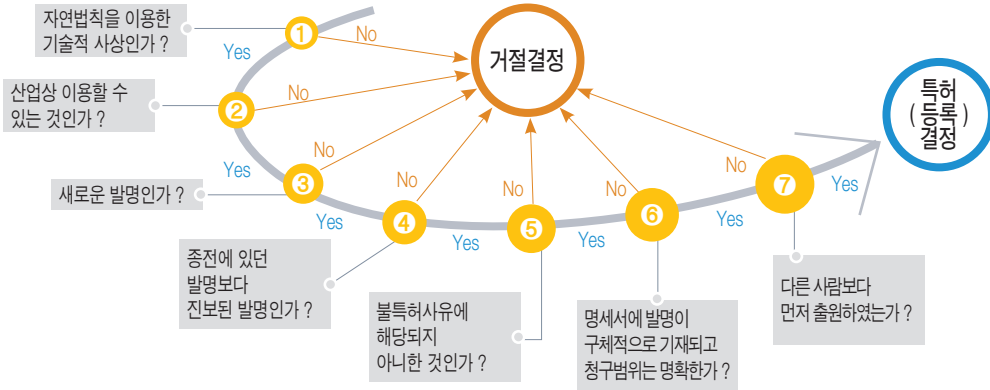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음

우리 특허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특허법 제 28 조 1 항) 예외적으로 국내출원의 경우, 우편물의 발신일이 분명한 경우와 수령증으로 발신한 날이 증명될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때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음(특허법 제 28 조 2 항)

(3) 속지주의

1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4) 특허 등록 요건



※ 특허(등록)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예: 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특허법 제 32 조)
-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특허법 제 41 조)

(가)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②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출원 시(시·분·초)
- 지역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 (2006. 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간행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③ 신규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 종래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④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공지 등은 특허거절 이유에서 제외함
- 대 상
 -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2006. 3. 2. 이전 출원	2006. 3. 3. 이후 출원
공지예외 대상을 1) 발명의 시험, 2) 간행물예외의 발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5)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 요 건

- 공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출원
- 출원시 공지 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예외)

(나) 진보성

① 진보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②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③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의의

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나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영구기관 등)